서울 행정 법원

사 건 2010구합5974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 고 청년필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21-25 5층
대표이사 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 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1502 4층
대표자 위원장 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9. 9.

1.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영화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광수,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09. 12. 12. 피고에게 ‘15세 이상 관람가’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2.14.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이라고 한다) 제 29조 제 2항 제4호 및 영진법 시행령 제 10조의2 제 1항.[별표 2의21 제4호 등에 ᄯᅡ라 ‘청소년 관람 불가’의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7. 8. 9호증(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영진법 제 29조 제 2항 제4호 및 영진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제 1항. 【별표2의2】 제 4호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은 헌법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영화에서 선정적 장면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동성애에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동성애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영화는 성적 정체성이 미숙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이를 수용하거나 소화하기 어려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보아도 청소년이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주인공인 두 남자가 2분여 동안 진한 키스를 하고 상체를 혀로 핥으며 격렬히 애무하는 장면이 묘사되는 등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도 선정성-모방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화는 영진법 및 영진법 시행령 등이 규정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년들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인 "소년, 소년을 만나다"(2008년 개봉, 상영시간 35분)를 제작한 김광수 감독이 위 영화의 후속편으로 만든 이 사건 영화는 전체 상영시간이 54분인데. 본 영화 29분과 메이킹 필름(making film ;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제작 과정을 담은 영화) 2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복무 중이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2) 이 사건 여화에서 주인공이 애인을 면회 가서 면회신청서의 관계란에 '애인'이라고 적었다가 이를 지우고 '친구'라고 적는 장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면회를 온 애인의 어머니에게 애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친구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3) 그리고 두 주인공이 여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게 된 후 잠든 어머니 곁에서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키스를 하려다가 어머니의 잠꼬대에 멈추는 장면이 있고, 이어서 다음날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주인공이 여관방으로 돌아가 키스를 하고 서로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비롯한 상체를 혀로 애무하는 장면이 약 2분여 동안 나온다. 그러다 지갑을 가지러 다시 여관방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주인공들의 관계가 단순히 친구사이가 아닌 애인사이임을 알게 된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의 관계를 당당히 밝히기로 결심한 민수가 휴가를 나와 석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도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서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4) 이 사건 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상영등급 심의를 받은 영화인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등급을 받았는데, 영화중에는 왕과 왕후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두 카우보이의 동성애를 애틋하게 묘사하여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미국 영화인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역시 국내에서 2006년경 피고로부터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아 상영된 바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인 ”인생은 아름다워“가 15세 이상 시청가‘로 공중파 TV에서 방송되고 있다.

(5) 이 사건 영화가 개봉될 당시 영화주간지에서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소년, 소년을 만나다>”의 소년들이 자랐다. 소년들의 사랑이 어설픔 포옹으로 끝났다면, 석이와 민수는 키스를 하고 섹스도 하는 눈치다.... 예상 가능한 궤적을 따라 진행되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건 눈물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태도다.... 그들의 사랑은 지극히 건강하고 온당하게 느껴진다.... 순정만화에 가까워 보이는 게 전작과 동일한 아쉬움이다.“<씨네 21> “생동감 있는 에피소드로 영화적 재미를 주는 동시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게이 커플의 현실에 접근한다”<무비워크>

(6) 한편,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광수 감독이 직접 메이킹 필름에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과정을 보여 주면서 제작 의도, 이 사건 영화의 사회적 의미 등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밝고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7) 이 사건 영화는 2009년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이드앵글부문 공식 초청작으로서 ‘12세 미만 관람불가’의 등급으로 상영되었고, 2009년 제 35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국내 단편 초청작으로서 ‘15세 미만 관람불가’의 등급으로 상영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제 3, 4, 5,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V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화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의 예술의 자유로도 보호된다 할 것인데,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되는 것이므로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영화의 내용은 관람자의 시청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일단 상형된 뒤에는 그 효과를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위반되거나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영등급을 분류함으로써 상영과 관람의 방법을 조장하도록 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통해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되

고, 영화제작자 등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하여 영화내용을 스스로 수정·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화는 영진법 시행령 제 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 4호 소정의 '청소년 관람불가'로 상영등급분류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다. 원고는 본 영화와 메이킹 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함으로써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자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비추어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영화에서 잠든 어머니 옆에서 주인공들이 키스하려다 멈추는 장면, 여관방에서 옷을 벗기면서 애무하는 장면, 광장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 등이 나오지만, 이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영화감독이 그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영화에서 비중 있게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묘사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적적이라거나 모방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신체가 완전히 노출된 장면이나 성기의 결합장면, 성기를 클로즈업한 장면은 이 사건 영화에서 아예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영화에서의 표현의 정도가 '15세 이상 관람가'의 등급 분류를 받은 다른 영화에서의 그것에 비하여서도 선정성 및 모방위험 등의 요소에 있어서 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은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마)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바) 이 사건 영화가 몇몇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되었고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화를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오로지 동성애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영화라고 판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범
	판사	김우현
	판사	이동욱

관계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개정 2009.5.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5.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2의2] <신설 2009.11.9>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관련)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기준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구체적이지 않은 것
 다. 폭력성 : 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지 않으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라. 대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바. 약물 : 음주·흡연 등을 미화·조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지 않고,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